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19. 1. .

발 의 자 : 강명숙 위원 외 1인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~ 2022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확정하여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19년 ~ 2022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2019년도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은 월 2,480,350원이며, 2020 ~ 2022년도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함(안 제3조제2항)
- 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, 쉬운 말로 쓰기 및 띄어쓰기 등 용어·문장 정비

3. 예산조치: 2019년도 예산편성(안) 반영

4. 입법예고: 필요

5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6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7. 관련근거

공문대호 : 기획예산과-12983호(2018.12.05.)

‘마포구 2019~2022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’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정활동자료의 수집·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”을 “의정활동 자료의 수집·연구와 보조 활동에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월900,000원”을 “월 900,000원”으로, “월200,000원”을 “월 200,000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, “일할”을 “날 수대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수지급일”을 “보수 지급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2,417,500원”을 “2,480,35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일할”을 “날 수대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2020년부터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

제3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보수지급일”을 “보수 지급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국내여행”을 “국내 여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외국에 여행할”을 “국외 여행을 할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<u>의정활동자료의 수집·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는 <u>월900,000원</u>으로 하고, 보조활동비는 <u>월200,000원</u>으로 한다. 단,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<u>일할 계산</u>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공무원의 <u>보수지급일</u>에 지급한다.</p> 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생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월 <u>2,417,500원</u>으로 한다. 다만,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<u>일할 계산</u>하여 지급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③ 월정수당은 구 공무원의 보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) ① ----- ----- ----- <u>의정활동 자료의 수집·연구와 보조 활동에 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월 900,000원</u>----- ----- <u>월 200,000원</u>----- ----- <u>다만</u>----- ----- <u>날 수대로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보수 지급일</u>-----.</p> 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2,480,350원</u>----- ----- ----- <u>날 수대로</u> ----- -----.</p> <p>③ 2020년부터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④ ----- 보수</p>

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

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 이외의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.

지급일-----.

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국내 여행-----

-----.

② 국외 여행을 할 -----

-----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관 계 법 령]

지 방 자 치 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 4. 1.>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

[시행 2018.10.30.] [대통령령 제29261호, 2018.10.30., 일부개정]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가

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2. 예비: 별표 5에 따른 예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3. 월정수당: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, 심의회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